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0.

발 의 자 : 조정훈 · 박충권 · 서천호
김민전 · 김대식 · 김용태
강명구 · 인요한 · 김미애
이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력·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각급학교의 교원과 다르게 불 이유가 없음에도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각급학교 교원의”를 “각급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<u>각급학교 교원의</u> 징계 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4제4항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소청심사(訴請審査)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~ ④ (생략)	제7조(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<u>각급학교와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